

의안번호	2211007
의 퇴 인	서삼석의원
회 답 일	2025.8.14.
추계번호	25D3377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 섬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에 따라 2027년 242억 4,200만원~363억 6,4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1,261억 5,800만원~1,892억 3,700만원(연평균 252억 3,200만원~378억 4,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시나리오1)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국토외곽 먼 섬 주민 정주생활금 지원	24,242	24,727	25,222	25,726	26,241	126,158	25,232
(시나리오2)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의 75%에 해당하는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국토외곽 먼 섬 주민 정주생활금 지원	36,364	37,091	37,833	38,589	39,361	189,237	37,847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9조(교육비 등의 특별지원)	국토외곽 먼섬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13조(정주 생활지원금 지원)	국토외곽 먼섬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14조(노후 주택 개량 지원)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노후화된 주택의 신축 및 개수·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15조(선박 운항 지원)	국가등은 국토회곽 먼섬으로 유류 및 생활필수품을 운반하는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16조(유류비 과세특례)	국가등은 국토회곽 먼섬 주민이 구입하는 유류비에 대하여 조세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17조(국토회곽 먼섬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국토회곽 먼섬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18조(불법조업 방지시설 지원 등)	국가등은 국토회곽 먼섬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9조(교육비 등의 특별지원)	×	특별교부금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교부금 규모 등을 추정 곤란
2	안 제13조(정주생활 지원금 지원)	○	
3	안 제14조(노후주택 개량 지원)	×	국토회곽 먼섬의 노후주택 현황, 지원 비용의 범위, 지원 기준 등을 예측 곤란
4	안 제15조(선박 운항 지원)	×	운반선 및 여객선에 대한 지원 비용의 범위, 지원 기준 등을 예측 곤란
5	안 제16조(유류비 과세특례)	×	조세 관계 법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세제 지원 대상, 규모 등을 추정 곤란
6	안 제17조(국토회곽 먼섬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구체적인 면세대상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면세 규모 등을 추정 곤란
7	안 제18조(불법조업 방지시설 지원 등)	×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시설물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원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종류, 규모 등을 추정 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국토외곽 먼 섬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정주생활지원금의 금액에 대한 시나리오를 적용함
 -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¹⁾에 따라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 거주 주민에게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한 경우 월 12만원,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월 18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²⁾하고 있음
 - 국토외곽 먼섬 인구 규모(26,835명)가 서해 5도 인구 규모(8,382명)보다 많은 점을 고려하여 서해 5도거주 주민에게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 규모의 50%,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정주생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추계함
-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국토외곽 먼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하고, 국토외곽 먼섬의 인구 26,835명의 90%가 6개월 이상 해당 섬에 거주하였으며, 추계기간 동안 인구가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참고 1] 국토외곽 먼 섬 현황
- 6개월 이상 거주자 중 10년 이상 거주자의 비율은 행정안전부의 ‘서해 5도 종합발전지원’ 사업의 해당 비율(68%)을 준용하며, 추계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1)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2조(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① 국가는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서해 5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이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25. 1.)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체류지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한 날부터 실제 체류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10년 이상 서해 5도에 주소나 체류지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지원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급액) ①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금은 1인당 매월 12만원으로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금은 1인당 매월 18만원으로 한다.

- 정주생활지원금 단가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³⁾을 적용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 비용추계의 전제에 따라 6개월 이상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한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되, 주민 1인당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의 금액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구분
 - (시나리오1) 서해5도에 거주한 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의 50%
 - 2025년 기준 6만원(6개월 이상 거주자), 9만원(10년 이상 거주자)
 - (시나리오2) 서해5도에 거주한 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의 75%
 - 2025년 기준 9만원(6개월 이상 거주자), 13.5만원(10년 이상 거주자)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시나리오1) 서해5도 기준 50% 지급	6개월 이상 거주자(7,728명)	5,789	5,905	6,023	6,143	6,266	30,126
	10년 이상 거주자(16,423명)	18,453	18,822	19,199	19,583	19,975	96,032
	합 계	24,242	24,727	25,222	25,726	26,241	126,158
(시나리오2) 서해5도 기준 75% 지급	6개월 이상 거주자(7,728명)	8,683	8,857	9,034	9,215	9,399	45,189
	10년 이상 거주자(16,423명)	27,680	28,234	28,798	29,374	29,962	144,048
	합 계	36,364	37,091	37,833	38,589	39,361	189,237

주: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 물가상승률(2025.7.)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 물가상승률(%)	2.0	2.0	2.0	2.0	2.0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별로 2027년 242억 4,200만원~363억 6,4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1,261억 5,800만원~1,892억 3,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시나리오1)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의 50%	24,242	24,727	25,222	25,726	26,241	126,158
(시나리오2)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의 75%	36,364	37,091	37,833	38,589	39,361	189,23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홍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홍연	02-6788-4673	limhy@nabo.go.kr

[참고자료] 국토외곽 먼 섬 현황(43개, 2024.12.31. 기준)

연번	시도	시군	섬이름	인구
1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4,875
2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도	1,201
3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청도	221
4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	1,981
5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연평도	104
6	충청남도	보령시	황도	2
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어청도	262
8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상왕등도	50
9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하왕등도	22
10	전라남도	여수시	거문도	485
11	전라남도	여수시	서도	596
12	전라남도	여수시	동도	246
13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	180
14	전라남도	영광군	대석만도	11
15	전라남도	영광군	죽도	4
16	전라남도	영광군	횡도	3
17	전라남도	완도군	여서도	100
18	전라남도	진도군	동거차도	119
19	전라남도	진도군	서거차도	98
20	전라남도	진도군	상하죽도	12
21	전라남도	진도군	맹골도	93
22	전라남도	진도군	죽도(조도면)	39
23	전라남도	진도군	곽도	21
24	전라남도	신안군	대흑산도	1,719
25	전라남도	신안군	장도	80
26	전라남도	신안군	영산도	50
27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	439
28	전라남도	신안군	대둔도	279
29	전라남도	신안군	상태도	69
30	전라남도	신안군	중태도	11
31	전라남도	신안군	하태도	116
32	전라남도	신안군	가거도(소흑산도)	386
33	전라남도	신안군	만재도	70
34	전라남도	신안군	다물도	194
35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	9,042
36	경상북도	울릉군	죽도	1
37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34
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상추자도	922
3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하추자도	635
4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비양도	140
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	1,618
4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가파도	216
4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라도	89

자료: 행정안전부